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 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1,280,718	18,038,422
일반회계	432,600,000	12,978,000
특별회계	163,450,000	4,903,500
기타특별회계	163,450,000	4,903,5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20,000	30,600
주차장특별회계	350,000	10,500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30,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0,000	6,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9,590,000	3,887,7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50,000	28,500
치수사업특별회계	330,000	9,9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0,000,000	900,000
기금	5,230,718	156,922
재난안전기금	1,329,852	39,896
농어업발전기금	2,423,310	72,699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48,856	19,466
자활기금	726,000	21,780
식품진흥기금	102,700	3,08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324,649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